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14-0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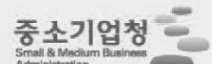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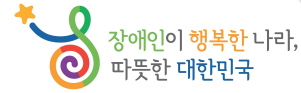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목 차



I. 제4차 계획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추진배경 3
- 2. 추진경과 4

II. 장애인 정책여건 및 특성

- 1. 장애인 정책여건 7
- 2. 장애인정책의 특성 10

III. 제3차 계획 평가

- 1. 추진 개요 13
- 2. 주요 추진성과 14
- 3. 한계 및 문제점 19

IV. 제4차 계획 기본방향

- 1. 비전 및 정책목표 23
- 2. 추진방향 24
- 3. 장애인정책의 오늘과 미래(5년 후) 25

V. 분야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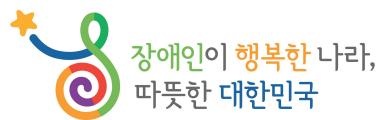
-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29
-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40
-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53
- 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61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 1.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75
- 2. 성과목표 76
- 【참고】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부서 91



I. 제4차 계획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속 추진

- '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추진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96.12)
 - 장애인 및 고용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내 각 부처가 협력하여 '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제2차 계획은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03년부터 '07년까지 추진
 - 제3차 계획은 이전의 10년에 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향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제3차 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성과와 한계, 새로운 사회·환경변화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장애인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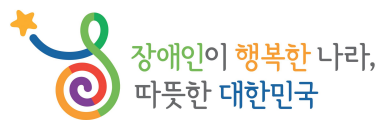


2 추진경과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2.2~)
 - 실무추진단(정부부처 과장급, 장애계 실무자, 연구진)을 구성 운영('12.2~10, 3회)
-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11.4~'11.11)를 토대로 제4차 신규 세부추진과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2.2.20)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안)에 대한 연구진·장애인단체·복지부 담당자 회의 실시('12.3.2)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12.3.9)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고('12.3.21)
 - 제4차 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안) 보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실무추진단 비전, 분과구성 관련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12.4.24)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12.6.4~6.7)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회의 개최('12.7.10~7.12)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목표, 방향에 대한 장애인단체,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12.7.17)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비전(안) 마련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전문가 회의 개최('12.9.3~9.17)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2.11.27)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검토를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12.11.30)
-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12.12.7)



II. 장애인 정책여건 및 특성



1 장애인 정책여건

□ 등록장애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 급증

- 장애유형 확대, 고령화 등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 '11년 12월말 현재 : 252만명, 전체 인구대비 5%

-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장애인 중 90%)가 대부분
-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08년 36.1% → '11년 38.8%)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천명,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등록 장애인수	1,129	1,454	1,611	1,777	1,968	2,105	2,247	2,419	2,517	2,519
증가율	-	22.3	9.7	9.3	9.7	6.5	6.3	7.1	3.9	0.1

□ 장애인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

- 특히,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 '00년(19.0%) → '05년(30.1%) → '11년(31.5%)

□ 장애인 가구 및 주거 형태에 따른 주거지원 확대 필요

- (가구형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형태는 2인 가구(31.3%) → 4인 가구(19.8%) → 3인 가구(19.6%) → 1인 가구(14.8%) 순

- 장애인이 2인 이상 있는 가구도 전체 장애인 가구의 14.7%에 이릅니다



○ (주거형태) 단독주택 48%, 아파트 40%, 다세대주택 8%, 연립주택 2% 순

*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25천명이 생활 중('11)

- 이 중 월세가 21.4%, 전세 11.6%, 무상 8.1% 등 비(非)자가 가구가 41.1%임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전체학령인구(855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2천여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전 '07년 6만6천명 대비 25.4% 증가('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 이는 장애범주 확대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무상교육 강화에 기인

* '07년 8개영역(시각·청각·정서·학습·언어·건강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 '08년 2개 영역 추가(자폐성, 발달지체)

* 장애영아 무상보육·교육, 만 3세 이상 의무교육 실시('11)

□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 지원 필요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불과

* 1인당 소득(장애1~2급)은 54.3만원, 재활치료 등 생활비용(장애1~2급) 23.6만원 추가 소요

○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

* 취업 장애인 월평균임금 142만원, 전체 근로자 임금(311만원)의 45.7% 수준

○ 장애인 취업분야는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 비율(30.1%)이 높고, 전문가(7.1%) 및 사무종사자(6.5%) 비율은 낮은 수준

구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장애인	100.0	4.1	7.1	6.5	6.8	8.2	12.2	12.5	12.4	30.1
전국 비율	100.0	2.3	19.6	16.4	10.3	12.1	4.8	9.4	11.6	13.5

표: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직무) (단위: %), 출처: 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2011)

□ 사회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28%가 타인의 도움 필요
 -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와주는 사람의 대부분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구성원(84.2%)
-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낮은 국민인식
 - 교통, 대중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 * 공공기관 등 정당한 편의제공 :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 교육기관 41.3%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80.7%



2 장애인정책의 특성

주요 특성

- ◆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 ◆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 ◆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

□ 특정 대상(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책의 종합 추진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사람이 대상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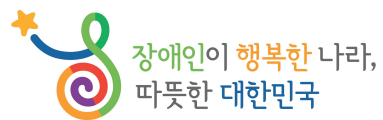
□ 의료보장, 소득보장, 일자리, 주거지원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정책 추진

-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보육, 장애연금 및 수당 지급,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지원
- 행안부(IT기기 지원), 고용부(고용지원, 의무고용제), 교육부(특수교육), 국토부(주거·교통시설) 문광부(장애인 체육·문화·여가), 방통위(방송접근성 지원)

□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

- 현금급여, 현물급여 및 세제감면 등 **80여가지** 이상의 장애인서비스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
 - 현금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
 - 장애인활동지원 등 현물급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지급
 - 세제감면, 교통시설, 문화시설 무료이용 등은 법령 등에 규정

III. 제3차 계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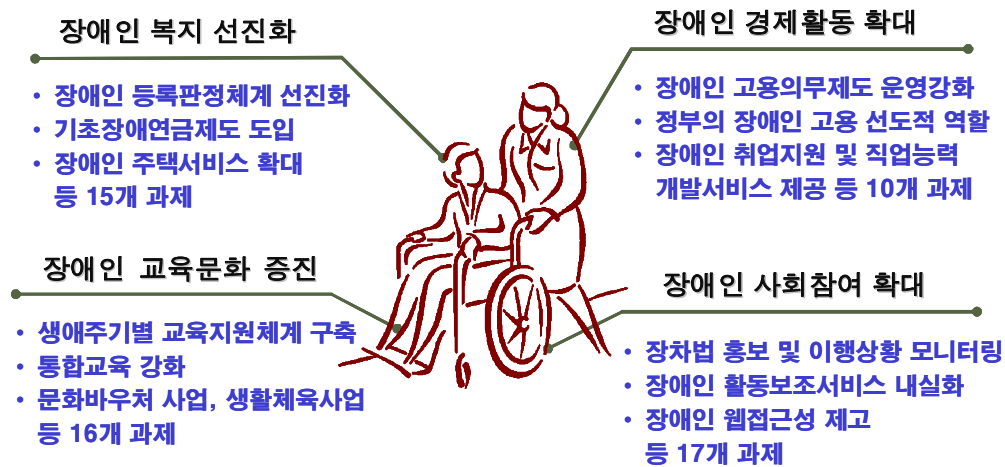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장애인복지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정책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 증대

○ 1~2차 계획을 기반으로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08. 8)

* 1차 계획(’98~’02), 2차 계획(’03~’07), 3차 계획(’08~’12)

□ (주요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4개 분야 4대 목표(①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②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③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58개 과제 추진



□ (이행점검) 5개년 계획 수립 후 주요과제에 대하여 9차례의 실무위원회와 7차례의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행사항 점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정위원회	1	1	1	2	2
실무위원회	1	1	2	2	3



2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정책의 체계적 틀 구축과 대상자 및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지속 증가

○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 추이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58개)복지예산 : ('08) 9,500억원 → ('12) 1조9486억원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58개과제)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58개과제)예산	9,500	12,038	15,885	17,838	19,486

□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및 확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1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
- 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
-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계획 수립('12.7.6)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8.23 시행)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개정('11.3.30 일부개정)
 - *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개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10.12.20 일부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0.6.30 시행)

1 장애인 복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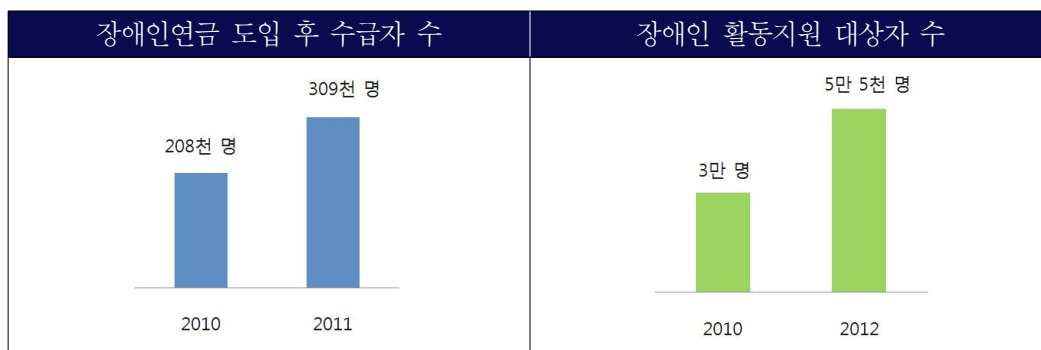
□ 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제도의 기본 틀 완비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10.7)**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도입 후 수급자 확대 : ('10) 208천 명 → ('12) 327천 명, 57% 증가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도입('11.10)**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 ('10) 3만명 → ('12) 5만5천명



-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44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서비스 이용자 증가 : ('10) 32,571명 → ('11) 43,944명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확대 및 전국 제공기관 지정 등 서비스 접근성 개선

*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10) 688명 → ('11) 2,500명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확대 : ('10) 801개소 → ('11) 99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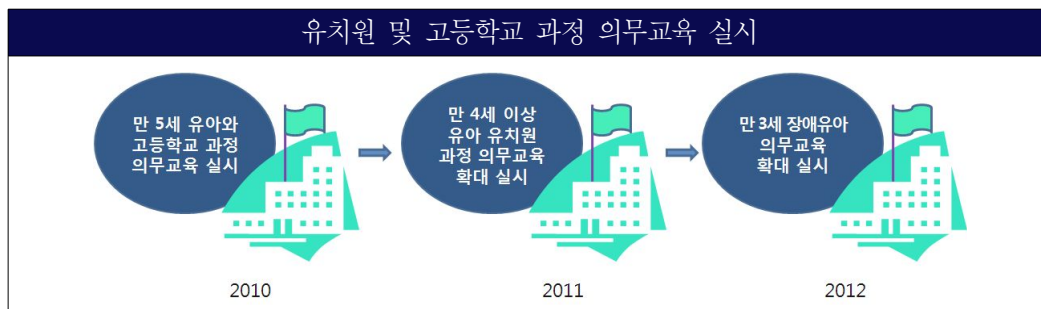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12.7)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조기발견 및 치료, 복지서비스 및 교육·고용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장애유형별 지원계획 마련

②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

□ 장애아동 보육·교육 지원 및 유치원·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



□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 서비스 이용 대상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327만 명 중, **37.3%인 122만 명(카드사업 106만명, 기획사업 16만명)이 혜택 수혜**

* '10년, 67억원 → '11년, 347억원(518% 증가, 지방비 102억원 포함)

□ 생활체육 참여환경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사업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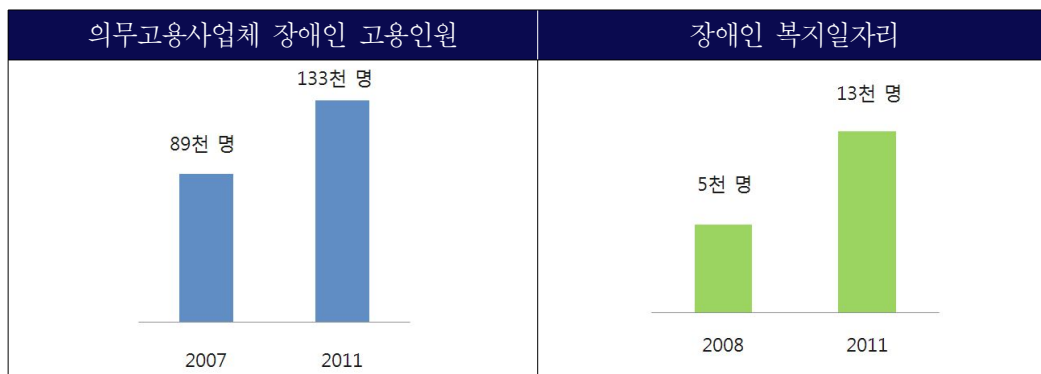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참여율	6.3%	7.0%	8.3%	9.6%	10.6%

③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

-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07년 89천명에서 2011년 133천명으로 **49.4%(44천명)**증가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 2% → ('09) 3%, 공공기관 : 2% → ('10) 3%, 민간기업 : 2% → ('10) 2.3% → ('12) 2.5% → ('14) 2.7%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 : ('08) 5,000명 → ('11) 10,300명





④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이행 모니터링 시행을 통한 법령 이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발판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08.11~'09.5) 및 모니터링 실시('09~'12)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기반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기초역량 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교육·의료·법률·취업알선 등),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전국 22개소 설치·운영(서울 4, 경기·인천·전남 2, 기타 1개소)

3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정책분야별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종합적인 대응노력은 아직 부족
 - 부처간 유기적 연계 및 장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파급효과 한계
 - 법률 제정 등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권리 사각지대 상존
- 신규 제도 도입 및 장애인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경직성으로 개별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강화되었으나,
 - 상대적으로 고용, 문화, 체육, 주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은 다소 미흡
- 계량화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미비로 추진실적 평가의 어려움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실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획과 평가 환류체계구축 필요
- 분야별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종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의 지속 확대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은 양적으로는 확충되었으나, 서비스 내용과 기준 등 질적 관리는 다소 미흡



○ 장애인 교육문화

- 특수교원 부족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 지원 제공에 어려움 초래
- 문해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경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성인의 개인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 장애인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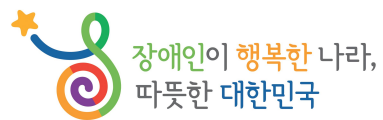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대상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저조
-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기재 및 편의시설 미설치, 이동편의 부족 등 고용 환경이 여전히 문제

○ 장애인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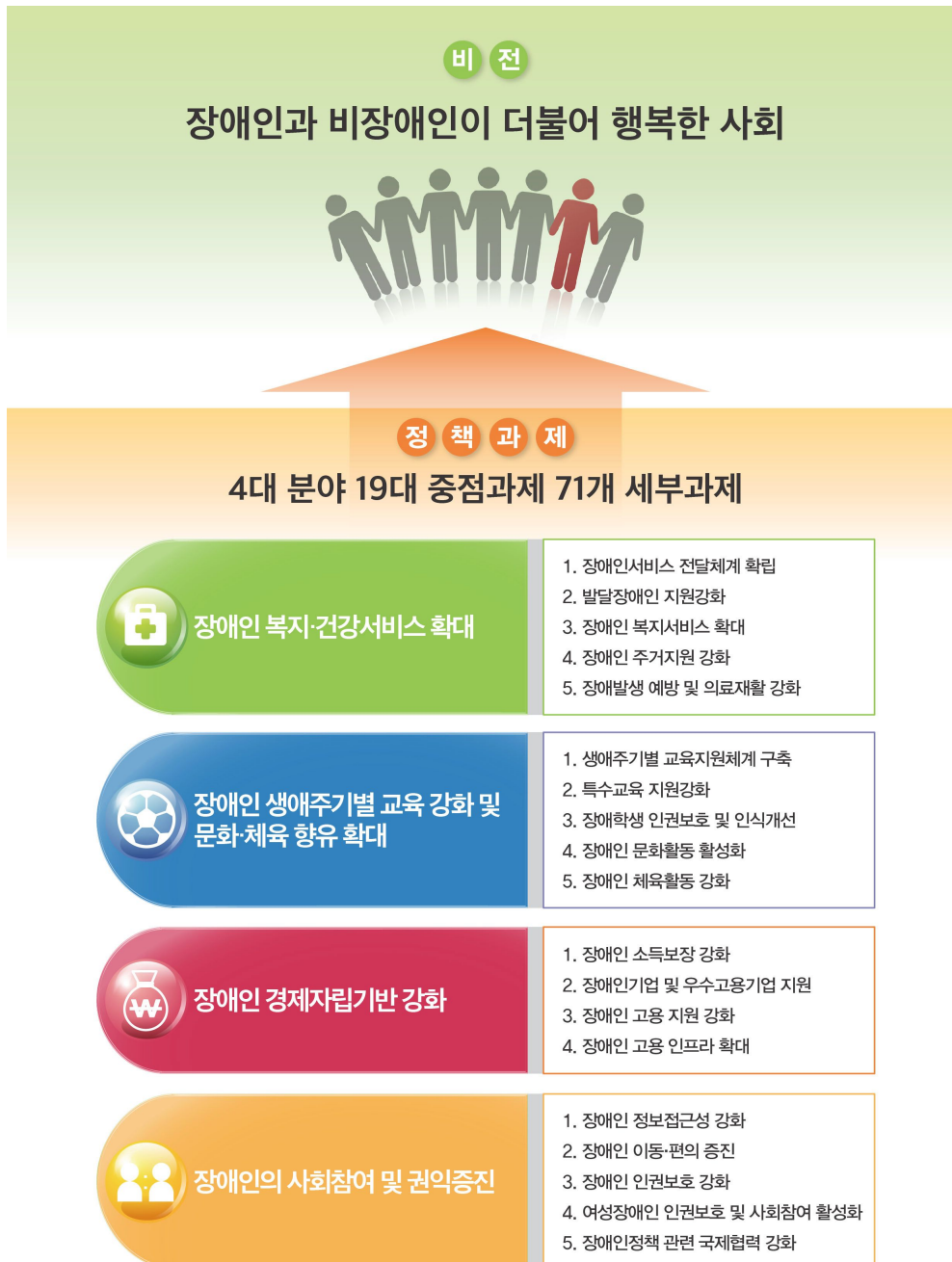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은 '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1%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11년 말 기준 12%에 불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 미흡
-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성폭력 발생 등 위험 환경요인의 사전차단 추진 및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필요



IV. 제4차 계획 기본방향



1 비전 및 정책목표





2 추진방향

□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정책 추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복지,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 향후 5년간 각 영역별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세부정책과제 추진
 -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4대 분야, 19대 중점 과제, 71개 세부과제

□ 장애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 장애등록단계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장애인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지적 관점 도입

□ 우리나라 주도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정책 추진

- “인천전략”의 주요 내용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제5차 계획에 반영하여 “인천전략”의 목표 달성
 - 인천전략의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
-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연계·조정 기능을 통해 인천전략의 이행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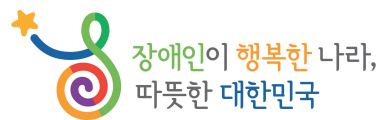
▶ 향후 5년은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에 새로운 개념 도입과 장애인 삶에서의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권리 실현의 전기 마련

3 장애인정책의 오늘과 미래(5년후)





V. 분야별 정책과제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1-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현황 및 문제점

- 현금급여, 현물급여, 세제감면 등 **80여가지 이상**의 장애인서비스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
 - ▶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장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63.3%로 특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중 17.8%에 달함('11년 장애인실태조사)
 - ▶ 장애인등록 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연계 필요**
-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판정**(장애진단 및 등급심사) 및 **장애인 등록 수행**(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장애계는 현행 **장애판정제도 개선 및 장애범주 확대** 지속 요구
-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통역 지원이 미흡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가중
 - * 주된 의사소통방법으로 청각장애인 중 4.6%, 언어장애인 중 10.4%가 수화 사용('11년 장애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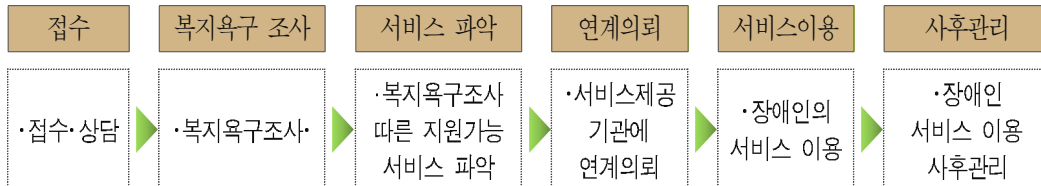
1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일자리, 재활서비스, 돌봄 등) 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장애등급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장애인서비스 연계 강화(91개 지사)



- 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지원센터의 feedback**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수요)-지자체-제공기관(공급)간 서비스 연계 강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업무흐름도】



② 장애판정제도 개선

- 장애유형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과정 등을 통해 제기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사항 반영**
 - * 예) 중복장애 합산 기준 개선 등
-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한 **장애등급제도 개선 추진**
-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영역 설정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 장애인복지인프라연구('09년)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소화기장애, 기질성뇌질환 등 3차 확대 제안

③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앙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 지자체 수화통역센터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 * 지자체 수화통역지원센터 현황 : 180개소('11.12)
 - 의료, 법률 분야 등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및 지원
- 수화통역 교육 실시, 수화 홍보 등의 업무 수행

1-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고,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 필요**

* 총 183천명(지적 167천명, 자폐성 16천명)으로 장애인의 7.3%, 중증장애인의 13.8%

▶ 현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지원계획 수립(7.6) 및 시행 중

* 발달장애인실태조사(2011)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등 조사

■ 발달장애는 뇌 발달이 활발한 **생애초기 개입 시 긍정적 치료효과**를 기대, 우리나라도 발달 장애 의심은 **빠르나 진단은 지연**

* 만 3세 이전 장애의심 42.3%, 7세 이전 진단은 32.9% 불과(미국 3~4세, 영국 5~6세경 자폐성장애의 50%가 진단)

■ 장애인 돌봄의 부담으로 부모 등 가족의 **정서적 상태 취약**

* 보호자 중 우울증 의심 51.9%, '전반적 삶에 만족' 1.6%(일반가구 52.7%)

■ 아동기부터 장애가 발생하여 일생동안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노후 소득보장 곤란**

* 개인연금 가입률(%) : 지적장애 0.7, 자폐성장애 0.5

▶ 경제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소득을 준비하고자 하여도 **적절한 방법 부재**

①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 조기 진단체계 구축

-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 진단도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영유아 건강검진(K-ASQ)결과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 단계적 확대('13년 6,480명)



○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②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 치료실 설치

- 국립서울병원부터 국립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 치료실 설치, 문제행동 치료 사정도구 등 개발 및 보급

○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

③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13년 2천건 → '17년 5천건)

-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추진

- 각종 복지시책 및 이용방법, 주요 제공기관 현황 등 발달장애인 부모 매뉴얼 제작·보급

④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도입('15~)

-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출시

○ 장애인신탁제도 개선 및 보완

-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사용이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 제도 수정·보완 추진

* 자익신탁 :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의 원금과 이익을 가지고 가는 신탁

- 그 외 다양한 해외 신탁제도 검토 및 관련 상품 출시 추진

1-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활동지원**은 '11.10 제도 시행 후 수급자격자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청자격의 제한(장애 1급)으로 장애계 요구에 미흡
 - * 수급자격자가 '12.7월말 5만명으로 '11.7월말 대비 38% 증가
- **장애아동(18세 미만)**은 전체 장애인의 1.5%인 **78,186명('11.12월)**으로,
 - * '11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 2,519천명
 - ▶ 이 중 **37천명만이 재활치료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애아동가족 돌봄서비스는 **2,500명에 불과한 실정**
 - * 장애아동가족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11년 장애인실태 조사)
-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 ▶ 여성장애인은 **제왕절개 수술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비율**이 높으며, **장기간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비장애여성 35.2%),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 이용 22.6%(비장애여성 15.7%)(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신청자격 확대)**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13년 2급으로 확대**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급여량 확대)** 중증장애를 가지고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 중심으로 지원 확대
 - (기본급여) 월 **한도액 기준개선**을 통한 급여량 확대 추진, 장애아동도 성인 수준(월 62시간 → 103시간) 으로 확대('13~)
 - (추가급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도 독거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가급여 지급('13~)



②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장애유형('12년 6개 유형) 및 연간 지원대상('12년 39천명)을 단계적으로 확대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장애에 특화**하여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에 맞춰 연간 지원 대상 순차적 확대
 - **장애아 가족 돌봄** 시간을 연간 320시간에서 **연간 480시간으로 확대** 지원

③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실화**
 -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 현실화 추진**
 - * '12년 예산 : 지원대상 1,307명, 지원액 1백만원(출산시 산모 1인 기준)
 - 인터넷 등 정보매체와 관련단체, 지자체를 통해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 누락을 사전 방지**

④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 목적의 보장구(**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해 **보험 급여 적용 확대** 추진('17년 대상자 4.6천명, 보험급여 기준액 200만원, 보험자 부담 80%)

1-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라 입소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 못하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적 역할 가치 저하**
 - ▶ 지역 사회에서 살기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많음*에도 탈시설 지원 미흡
 - * 서울시 시설 거주 장애인(3,252명, '08년)의 57%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희망
 - ▶ 시설 소규모화 추진을 통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욕구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촉진* 필요
 - * 100인 이상 거주시설이 전체시설(490개소)의 17.8%(87개소), 현원은 전체(25천명)의 41%(10천명) 이룸
-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시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 * '11년 : 전세자금 2,421건, 최초구입자금 10건, 근로자구입자금 82건 지원
 - ▶ 장애등급 불문하고 동일한 우대금리 제공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임대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 해소 필요**
 - * '09년부터 영구임대 건설 재개

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12년 35개소 → '17년 60개소)
 - * '1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68개소 중 35개소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 관리 강화
 - 시설퇴소 장애인의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사업의 기반 마련



②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대규모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13~)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 : ('12)17.8% → ('17)12.2%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12년 120개소 → '17년 220개소)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13~)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본인 부담금 고시안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기준 마련

③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장애인가구 우대금리적용
- 화장실, 주방, 높이 차이 제거 등 일상생활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확대

④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14, '16)

-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 * 주택의 유형·규모, 주택의 시설·설비 및 주택가격, 만족도 등

○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우선)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연간 건설물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 청약순위*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지속 공급
 -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1-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 발생의 90%를 차지하는 후천적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의 기틀 마련 필요**
 - ▶ 국가적 장애예방체계 구축 및 장애예방센터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장애발생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인력 및 인프라 부족
- 6개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장애인 재활병원 병상수를 확충하였으나,**
 - ▶ 장애발생초기 적절한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체계는 아직 미흡
 - * 경인(인천), 영남(양산), 충청(대전), 호남(광주), 강원(춘천), 제주 총 900병상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거점 보건소는 60개소에 불과
 - ▶ 특히, 재활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기반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사회기반 재활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
- 장애인들은 건강상 취약한 계층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나 이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
 -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이 취약하고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하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
 -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2.3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 당뇨(3.9배), 등 질환에 취약
- 장애인 건강정책의 근거 및 건강통계기반도 취약**
 - ▶ 장애인의 평균수명, 주요 사망원인 등 필수 건강통계 미비
 - * 장애인 건강모니터링 및 통계생산 등을 위하여 장애인건강연구사업 시행('12~)
-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른 순환기계 질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동 질환에 대한 진료시설 건립 필요**



①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
 - 장애발생예방교육 전국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자재 제작·보급
 - 지역별 장애발생예방강사 양성 및 관리 등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의 확대**(’12년 12천명 → ’17년 18천명)

②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권역재활병원 기능강화**
 - 권역재활병원 중심의 공공 의료재활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 재활 병·의원 시설 등 재활관련 기관간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전국 확대**(’12년 60개소 → ’17년 200개소)

③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 **(준비단계)** 국립재활원과 민간에서 운영 중인 주간재활센터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가정, 직장, 학교 등의 사회자원들과의 연계 사업 추진
- **(기반조성단계)** 재활병원기반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기반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보급
- **(사업활성화 단계)** 시범 사업 시행 후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 후 **한국형 사회복귀 모델 제시 및 확대**

④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권역 재활병원(6개소), 지역사회 재활병의원(14개소)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확대

○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 개발을 통한 건강통계 산출

- 장애인 건강관련 지표개발 및 적용 등 시범사업 실시('13)
- 장애 전 영역에 걸친 건강요구도 조사 실시, 장애인의 질환 및 사망위험도 분석('14)
- 국가단위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통계를 포함,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15)
- 지속적 건강요구도 및 건강기능지표 개발·적용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마련('16)
- 건강수준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7)

○ 고령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 고령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전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 소아마비, 성인 뇌성마비 클리닉 운영 및 노인기능평가 프로그램, 보행보조 프로그램, 인지·언어재활프로그램, 가상현실 재활프로그램 등 개발 보급

⑤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의료서비스 강화
- 1급 중상이자의 신체 및 상이처에 맞는 첨단 휠체어 등 공급
-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고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맞춤형 보철구 공급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2-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현황 및 문제점

■ '11.12월말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이용 장애영유아는 모두 17,967명으로 '07.12월말 20,783명에 비해 감소 추세

* '11.12월말 현재: 어린이집(14,405명) 유치원 및 특수학교(3,562명) 이용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 중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이용비율 증가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이용비율 : '07년도) 52.3% → '11년도) 67.1%

- 다만, 유아 특수교육기관에 비해 보육료 및 각종 지원이 열악하여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보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으나, 의무교육을 위한 학급 및 교육인력은 부족한 상황

■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립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 필요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지원 한계

* 도우미 지원 예산('12) : 3,921백만원, 2,494명

■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별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12) : 232기관, 43억원

▶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부처(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미흡

①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12년 171개소 → '17년 181개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매년 2개소씩 확충, '17년에는 **181개소 운영**
- 장애아보육료 지원 확대
 - 장애아 개별 특성 및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장애아보육료 지원 단가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통해 보육료 재산정 추진
 -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08)에 따르면 장애아 보육료는 0세 보육료의 1.3배 필요(757,600원 → 946,700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확대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직원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을 연간 100명씩 확대

②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장애영유아 교육여건 개선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보급('13)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영아학급 운영 가이드북 제공('14)
 - 장애영아 순회교육 제공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15~)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12년 344개소 → '17년 429개소)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계획 마련
 - *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유아 : 1,196개소 1,705명('12년 특수교육통계)



③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궁극적 복지인 자립 및 취업률 향상
 -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13~)
 - * 고등학교 특수학급 매년 30학급 확대 : ('12) 1,435학급 → ('17) 1,585학급
 -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13~)
 - * 전공과 매년 10개 확충 : ('12) 359개 → ('17) 409개
 - * 전공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직업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후 전공과 과정(1~2년 과정) 운영

④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14, '17)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12) 255개 → ('17) 270개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12) 2,494명 → ('17) 3,000명

⑤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원
 -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운영대학 수 : ('12) 5개 → ('17) 16개
 - 시·도교육청별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13~)
-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장애성인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자료 개발·보급('14)
- 장애성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14, '17)
 - 장애성인 유관부처(기관) 협의회 운영 : 분기별 1회

2-2 특수교육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에 대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였으나**,
 -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중 **계약직이 많아 잦은 이동과 책무성 부족** 등으로 지원서비스의 질 저하
 - *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08) 180개소 → ('12) 199개소
 -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12) : 총 1,846명 중 비정규직 1,551명
- '08년 이후 매년 특수학급을 **500학급 이상 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인문계고교 과밀 특수 학급 존재**
 - * 특수학급수 : ('08) 6,532학급 → ('12) 8,927학급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 교육 역량 강화 미흡**
 - ▶ 통합학급 담당 교사 특수교육관련 60시간 연수 이수율이 31%임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수 : ('12) 199개소 → ('17) 214개소(매년 3개소 이상 확대)
-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13~)**
 - * 특성화 센터 수 확대 : ('12) 3센터→ ('17) 33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제 강화('13~)**



②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일반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이상 증설**
 - * 특수학급 수 : ('12) 8,927개 → ('17) 11,427개
- 일반학급 담당교사 연 **500명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일반학교 배치 **감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일반학교 배치 감각장애 학생의 점역, 확대자료, 수화통역 등 지원

③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13~'17)**
 -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13~'17, 매년 각 2종)
- **특수교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사 직무별 전문연수과정 개발·운영('13~'17, 매년 각 3종)

2-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등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위기 극복 의지를 고취하고,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필요
- 장애학생과 가족 당사자의 자기보호 역량을 높이고, 동료학생 및 교직원들의 장애인권 의식을 제고하며
 - ▶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필요
 - *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교사, 또래학생, 학부모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하여 각각 21.4%, 49.2%, 15.1%가 '받았다'고 응답(2011년 장애인실태 조사)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배치기관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 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이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79.1%,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86.1%에 이르나, 특수학급이 미설치 된 초·중·고등학교는 64.4% 불과

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일반학교에서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이해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13~'17)
 -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의 장애이해교육 사이트(edu.knise.kr) 활용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 일반학교 초·중학생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관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13~'17)
- * 방송, 장애이해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이해 방송물’ 시청
-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후 백일장 대회 실시

○ 장애인식개선 관련 행사 개최

-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체험활동,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조사

②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의 운영 활동 지원
- 상설모니터단별 분기별 1회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 일반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국민 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방문형·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실시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의무실시

③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인원 수 : ('12) 6,625명 → ('17) 8,000명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확대

-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학생 수 : ('12) 3,888명 → ('17) 6,000명



2-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문화바우처사업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 ▶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향유 실태**는 비장애인의 평균적 문화향유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 또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실정**
- 여행바우처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대상 대비 수혜율이 매우 낮은 상황
 - * 여행바우처 수혜율 :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의 2%(’11)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홍보강화 필요**
 -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예술단체(예술가) 지원을 통한 문화향수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연, 전시 등의 관객 및 참여율 저조**
- 영화관람은 대중적인 문화향유 형태임에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영화 감상의 어려움이 많음
 - ▶ 특히, 영화제작사와 상영관은 수요가 적고 수익률이 낮아 **별도의 자막·화면해설 영화 제작 및 상영에 소극적**
 - *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 상영 : (’08)13편 482회, (’09)9편 456회, (’10)8편 245회, (’11)7편 226회

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13년, 16만)



- 지역 내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모셔 오는’ 또는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전·후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복지관에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여행바우처** 수혜자 지속 증대
-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 관광지 편의성 실태조사** 실시

②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단체(예술가) 및 지원 규모 확대**
 - * 장애 예술인(단체) 현황 : (문학부문) 52명, (미술부문) 60명, (음악부문) 52명 등 약 200여명, 단체는 사단법인, 예술활동 전문단체 등 67개 단체 활동
 - **지원유형* 수 증가 및 지원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우수 장애 단체(예술가) 발굴, 육성**
 - * 지원유형(4개) : ①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②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③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④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③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지속 확대(관람인원 : '17년, 12,000명 목표)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 **상영관 실태조사**를 통해 관람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 '12년 장애인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상영관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관람인원 : 연간 2,500명 목표)

2-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및 동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 ('08)6.3% → ('12)10.6%
 - * 연도별 동호인 인구 및 클럽 현황 : ('08)7,606명, 578개 → ('11)12,292명, 1,381개
 - ▶ 장애인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증가에 한계**
- 대한장애인체육회 블로그 및 생활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 제공**
 - ▶ 생활체육정보체계 운영에 있어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필요**
- 장애인 하계종목 훈련시설 설립에 연계하여 동계종목 훈련시설 마련 필요**
 - ▶ 2018 평창 동계 장애인올림픽 유치에 따른 기반조성 필요
- 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개최 지원을 통해 우수성적을 달성하고, 국제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영향력 강화**
 - * '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 종합 12위(금 9개, 은 9개 동 9개)
 - ▶ 향후 경기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 및 세대교체 시급**

1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배치하여 지도활동의 효과성 제고



○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 장애인스포츠센터교실, 여성장애인교실, 시·도별환경에 적합한 종목 선정 하여 상시 운영하는 종목별 교실 등 유형별 교실 확대 지원

○ 동호인 클럽 운영 다양화

- 기존 종목별 동호인 클럽 이외 학생 대상 주말 동호인 클럽 개설을 통해 다양한 동호인 클럽 운영 지원

○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뉴스포츠 종목 발굴 및 보급의 추진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종목의 확대 지원

② 장애인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체계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11~'14)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용 종목 확대

○ 장애인 동계체육시설 건립('14~'16)

- 동계종목 전용체육시설 확보(컬링/아이스하키)

③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강화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상위 입상을 통한 종합대회 출전 쿼터 확보

○ 장애인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 국제기구 전문인력 진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영향력 강화
- 국제스포츠기구 주요인사 DB구축 및 활용 홍보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2010. 7월부터 소득비례 기여식 국민연금(장애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기여 **장애인연금 도입**

▶ 다만,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현재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 수준('12년 최고 15.4만원)으로는 미흡

* 중증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23만원('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 비기여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층소득보장 체계(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공적부조) 구축

○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수급률은 OECD 평균 수급률에 비하여 낮고 장애인 가구소득도 전국평균에 비하여 낮아 소득보장 강화 필요

* 수급률 : OECD 6%('07년 20세 이상), 우리나라 1.8%('11년 18세 이상)

* 월 평균소득 : 장애인 가구 1,982천원, 전국 가구 3,371천원

①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13년 부가급여 2만원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 검토
 - 기초급여는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



②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세부 연구('13)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수준 및 지원범위 등 확대 연구
- 공사 연금 소득계층별 지원 모형 개발 및 고용연계 체계 연구 등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14)

- 소득보장 제도개선 추진 및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와 연계 강화 등



3-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마다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중이나,

 -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상의 한계, 공공기관의 낮은 인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부족 및 구매편의제공부족 등으로 **법정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 * 우선구매 현황 : ('07) 1,557억원 → ('11) 2,358억원(총 구매액의 0.55%)
- 경쟁시장에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하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 * 직업재활시설 현황('11년) : 456개소, 12,870명
 - ▶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고 동일업종 간 경쟁 불가피**
 - * 상위 10개 업종이 전체의 60% 차지(제과제빵, 인쇄물, 현수막 등)
 - ▶ **경영능력 및 수익창출 한계 등으로 일터로서의 기능 미흡**
 - *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월평균임금이 196천원이며, 100천원 미만 수령자가 50.5%에 달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02년 제도도입 이래 '11년 말까지 165개소가 설립되었으나**,

 - ▶ 경영상 애로 등으로 47개는 취소(28.4%)되고 '11년 말 현재 **118개소만 운영 중**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판로개척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사업주 등 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완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상향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구매, 구매통계 집계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품 유통 활성화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기능 확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매년 30개소), 1사 1시설 결연운동 전개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 확대 및 페널티 부여
-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 확대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도입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세제혜택 확대(예: 현행 4년 → 5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With+) 설립 유도를 위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별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차등적용
 - 경영계와 공동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 전개
- * '15년까지 설립지원금(10억원) 한시적 지원

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용자 및 무상지원 확대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확대,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서비스 형태개선
-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등 패키지형 지원시스템 구축
 - *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 채용적합 직무발굴, 적합장애인 알선, 맞춤형훈련을 통한 적합인력 양성, 고용환경개선 시설 지원 등 지원패키지 구성
-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의무 평가(가점 및 감점제)를 강화하고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제공
-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우대조치에 준하여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3-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참여자의 근로 조건 및 일반고용 전이 미흡**

 - ▶ 최근 5년간 일자리 수는 확대되었으나,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일수 또는 시간을 줄여 조정**
 - * '07년 830천원, 주5일, 1일 8시간 → '12년 877천원, 주4일, 1일 8시간
 - ▶ 현 일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일반고용 전이 미흡**
 - *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2011)에서 시급한 사업개선사항으로 고용전이 대책마련이 32.2%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열악**

 - * 2010년 장애인 고용률 36.0%-실업률 6.6% / 중증장애인 고용률 17.8%-실업률 11.8% (전체 고용률 60%-실업률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장애인 근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
 - * '10년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0%, 300인 이상 대기업은 1.69% (이 중 30대 기업집단 1.45%)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의무고용이행률 미흡
- 정부가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함에도 **일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
-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은 한정**
 - ▶ 취업에 성공한 중증장애인들의 직장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직무 유지율도 저조한 편**

①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지속 확대 추진('12년 10,800명 → '17년 14,000명)
-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근무시간 개선(주5일, 40시간) 추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방안 수립

- 중앙 및 지역별 협의체, 정책자문단 등 운영을 통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기능강화(일자리 정보제공 등)

○ 신규 일자리 개발

- 장애유형, 지역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직무개발 및 시범사업 직무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하여 신규일자리 보급 확대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재설정('14)

* 50인 이상 민간 사업장 : ('12) 2.5% → ('14) 2.7%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및 명단공표(연2회)를 내실있게 운영

③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의 장기적·점증적 상향 및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적합 지위 발굴

-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장애인 의무고용률(현행 2.5% → '14년 3%)

○ 교육청 등 자격요건이 필요한 기관의 장애인고용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④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훈련과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특화훈련 강화
-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단계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및 장애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대학생에 대해 기업연수를 통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취업컨설팅으로 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수혜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및 장년·여성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 매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의 수 확대 추진(취업확정인원 증대)
 - 취업 후 직무유지를 위한 직무보조인 지원
 - * 취업인원(명) : ('13) 6,463 → ('17) 7,330, 직무보조인 지원(명) : ('13) 100 → ('17) 114
-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의 카페·매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1개소당 중증장애인 평균 4명 일자리창출 목적)
 - *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 ('13) 7개소(28명) → ('17) 25개소(100명)

3-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창업보육센터(286개소)**는 장애인이 입주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장애인 창업 보육실로는 부적합**

 - ▶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는 장애인의 창업장벽 완화와 비즈니스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
 - * 센터의 보육실(52개소)은 장애인의 취약한 재정형편과 활동의 불편성을 감안하여 소규모(33㎡이하), 저비용(관리비 3.3㎡당 월 1만원)에 제공
 - * 보육실 입주경쟁률(공실 발생시) : ('08)20대1, ('09)22대1 ('10)25대1 경쟁률 증가
- 장애인에 적합한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 원스탑 창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창업지원 실시

 - * 아이템 발굴 및 창업지원 실적('11) : 창업아이템 30개, 교육 600명 수료, 창업자 87명
-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부 부처간(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연계·협력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구직자 불편 초래**

 - ▶ 이용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복지, 고용부문의 **연계체계 마련 필요**
 - * 복지부 직업재활시설(456개소), 장애인복지관(184), 교과부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10), 특수교육지원센터(195), 고용부 고용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와 그 동태적 흐름을 파악하고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 사회적 환경요인을 파악하는 통계 필요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미설치지역 광역 시·도를 평가하여,



- 연차적으로 지역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 공간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실 : ('12) 9개소 76실 → ('17) 17개소 140실

②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니즈 충족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창업 아이템 발굴 : ('13) 30개 → ('14) 30개 → ('15) 30개 → ('16) 30개 → ('17) 30개

-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및 교육지원시스템 구축·활성화**

- 웹 접근성 구축 및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상 자가진단 시스템 구현
- 시·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

③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Work-Together 센터(18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 수행**

- 진로·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및 알선, 장애대학생 취업캠프, 취업컨설팅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장애인고용공단-고용센터-특수학교(급) 간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강화**

④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3년부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현행 : 장애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4-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대체자료 제작, 웹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정보누리터 확산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고에도 불구하고,
 - * 대체자료 제작: ('08)1,099종 → ('12)4,000종
 - ▶ 장애인 대체자료의 절대적 부족 및 빠른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의 어려움 상존
 - * 우리나라 대체자료 제작은 미국의 10%, 스웨덴의 30% 수준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장애인 등 방송 소외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수준이 지속 향상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미흡
 - * 중앙부처 : ('08) 90.1점 → ('11) 94.8점/ 광역지자체 : ('08) 91.6점 → ('11) 96.1점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과 정보화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
 - * 전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78%, 장애인은 31% 수준(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 활용중심 정보화교육으로의 전환과 스마트모바일 접근기회 확대 등 디지털 사회통합정책 추진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을 통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
 - * '04~'11년까지 총 27개 제품 개발 및 '03~'11년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총 33,121대 보급
 - ▶ 중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기기 확대 및 다양한 보급품목 추가·확대 필요



①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개정 도서관법 시행(12.8.18.)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 제고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로 장애인 서비스 확대

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지상파방송사는 '15년(중양지상파는 2013년),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관리 및 지원
 -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통역 5%, 화면해설 10%,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 수준 목표달성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사업자 구분	대상사업자	최종 편성비율 목표(%)			달성시점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지상파	중양지상파	100	10	5	2013. 12. (화면해설: 2014. 12.)
	지역지상파	100	10	5	2015. 12.
유료방송 (플랫폼)	위성방송	70	7	4	2016. 12.
	SO	70	7	4	2016. 12.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보도·종합PP	100	10	5	2016. 12.
	일반PP, IPTV CP	70	5	3	2016. 12.

- 방송수신기기 보급을 통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
 -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에게 방송수신기 지속 보급

③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홈페이지 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교육, 정보 접근성 기술자문 및 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 개최
 - * 교육 : 매년 1,000명, 실태조사 매년 600개
-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 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도입·운영

④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보조기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매년 3개 제품 개발)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매년 4천명 지원)
 - 화면낭독S/W,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순회 전시회 및 이용수기 공모전 등 행사 개최

⑤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전국 정보화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 실시
- 장애인에게 실용적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활용 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취약계층에게 실제 요구되는 ICT 실용교육(IT Usefulness) 중점 편성
 - 2017년까지 장애인 약 18만명에게 정보화교육 추진



4-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1.5%**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 ▶ 지자체 재정여건 및 버스업체의 재정난 등의 사유로 '11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은 **12%** 수준에 불과
 - * '11년 현재 전국 시내버스 대수는 32,552대, 저상버스는 3,899대
-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11년 현재 **1,597대로 법정기준(2,793대)의 57.2%** 수준

 -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
-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8.2%, 72.6%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 ▶ 미설치역사(16.3%, 20.5%) 해소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급**
-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조성을 위해 도로·공원·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BF 인증 실시하고 있으나,

 - ▶ BF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시설주, 설계사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인증확대에 애로
 - * 인증실적('08~'12.4) : 총 203건(본인증 33건, 예비인증 170건)
-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필요

 - ▶ 보조공학기기 관련 산업은 영세하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역할 중요

①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 추진

* 저상버스 도입 : ('11) 3,899대 → ('16) 13,512대

- 표준모델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중형저상버스 제작사양 개발 R&D 추진('12~'14)

②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저조한 법정 도입대수를 고려, **국고지원 및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한 단계별 도입 추진**

* '16년까지 법정도입대수의 100% 도입 ('11) 1,597대 → ('16) 2,793대

- 장애인의 이동수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실태(1대당 장애인 이용률, 평균 이동거리, 이용시 대기시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적정 보급대수 기준 검토**

* 법적 운행기준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③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엘리베이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1동선 이상은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역사 이용객 증가로 인한 **추가 설치소요 검토 추진**
- (에스컬레이터) 역사 이용객 증가 추이를 반영한 **지속적 확충 추진**
- 수도권전철 역사 외부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목표	역수	3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엘리베이터(대)	2	5	1		
	에스컬레이터(대)	8	16	12	6	10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교육·홍보 등 **BF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 BF 인증건수 : ('13) 90건 → ('14) 100건 → ('15) 120건 → ('16) 150건 → ('17) 180건
- BF 인증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추진
 - * 장애인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대한 BF인증 근거 마련
- BF 인증 심사단 및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확대**

⑤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장애인도 첨단기술·제품을 이용하여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수요자기반 기술개발 추진**
 - 장애인 맞춤형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 지속 확대**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기술·제품의 보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처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토**
 - 복지부의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행안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등과 수요조사, 과제내용 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확산체계(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에 관계부처의 의견 반영(필요시 공동기획)

4-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필요
 - ▶ '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79.6%가 장애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비율은 7.8% 수준에 불과
- 현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법 적용대상 제한으로 복지에서의 차별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함
-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 재난, 재해, 화재 등 위기상황 시 이동 및 의사소통 제한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위기대응체계 미비

1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확대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2년 현재 중앙에 1개소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②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개정을 통한 **정신 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 병원 및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금지** 및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규정 등의 개정 추진

③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 **장애인 위기관리 방안 마련**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 및 정책 연구
 - 연계기관 간 협조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시각화, 감각화 등)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교육 및 예방교육**

4-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직장생활도 취약한 수준

*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있다' : 남성 63.4%, 여성 79.15%

* 교육수준 및 취업 현황

구분	교육수준			취업현황		
	무학	초등학교	대학이상	주당 평균 근무시간(시간)*	월 평균 수입(만원)*	평균 근속기간(개월)
남성	4.4	27.5	16.5	45	167	121
여성	22.1	40.2	5.9	34	81	90
전체	11.8	32.9	12.0	42	142	112

* 임금근로자 기준 임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운영 중이나 22개소에 불과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빈발

* 장애인 대상 성폭력발생 건수 : ('07)206건 → ('11) 408건(대검 자료)

▶ 성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은 전국 3곳(부산, 광주, 충북) 밖에 없으며, 가정폭력관련 보호시설도 2개소(서울, 광주)에 불과('11.12기준)

▶ 지적장애, 청각·언어장애 등 장애특성으로 인해 진술조사 및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직업교육,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확대
 - 지역산업체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장애여성 적합 직종 발굴·운영 및 취업 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실태 점검·평가 및 개선('13년도 평가실시)

②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연차적 확충

○ 장애인 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 확대

- 장애인보호시설 확충('12년 6개소 → '17년 11개소)
- 장애유형별(지적, 시각, 청각 등) 업무매뉴얼 개발·보급('13년~)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12년 9명→ '13년 12명)
- 수화통역사의 성폭력피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각·언어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수화통역사 지원

③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13년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4년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4-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장애이슈에 대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필요성 제기
 - ▶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전략수립 주도
 -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련 부처간 협력 필요
 -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미가입
 - ▶ 협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유보조항* 철회 및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한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
- * 유보조항(협약 제25조제e항) :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①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13~)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인천전략 이행점검
 -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상황 평가 보고

②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권리실천재단’(가칭, Make the Right Real Fund) 설립·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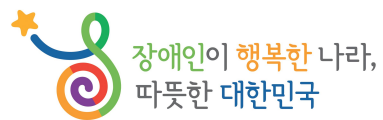


- 민관협력 하에 기금을 조성하여 아태지역 저개발국의 인cheon 전략 및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사업 지원

③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 '14년 심사가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자료 수집, 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면담* 대비('13)
 - * 본 심사 6개월 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대표단 사전 면담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 파악
 - *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15년 이후 제1·2차 국가보고서 통합심사도 가능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 '15년 제출 예정인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용역('14)
- (유보조항 철회) 협약 비준 시 상법 제732조와 상충되어 유보된 제25조 제e항 (보험 조항) 유보 철회 검토
- (선택의정서 가입) 협약 비준 시 미가입한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진정제도 운용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가입 여부 검토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1 추진체계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각 부처의 장애인정책이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연계·조정기능 강화 필요
 -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과 개별정책이 전체적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적 접근 필요**
 - 현재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사업평가**는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단순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 면밀한 **성과평가에 한계점 존재**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정책의 성과평가제도의 확립·강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
 - 각 부처의 매년 추진실적 및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
 - 투입자원 대비 정책성적을 평가하여 종합계획 등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
- 제4차 종합계획 2차 연도 종료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획 보완
- 제4차 종합계획 종료시점에 매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5년간 사업실시 효과성 평가**를 실시
- 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한 통계 개선



2 성과목표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1-1)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 욕구 및 생활능력 사정 후 공적·민간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연계사업 수행지사의 단계적 확충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td><td>40개 지사</td><td>91개 지사</td><td>91개 지사</td><td>91개 지사</td></tr></table>	'13년	'14	'15	'16	'17	-	40개 지사	91개 지사	91개 지사	91개 지사
'13년	'14	'15	'16	'17								
-	40개 지사	91개 지사	91개 지사	91개 지사								
(1-1-2) 장애판정제도 개선	- 현 등급제의 개선 방안 연구 및 추진(6등급제의 간소화 등) -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장애등급 심사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 장애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의 발전에 따른 판정기준 개정 추진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 작업의 실행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등급제 개선방안 연구</td><td>등급간소화 등 등급제 개선추진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td><td>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개정</td><td>판정기준 개정안 마련</td><td>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개정</td></tr></table>	'13년	'14	'15	'16	'17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간소화 등 등급제 개선추진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개정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개정
'13년	'14	'15	'16	'17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간소화 등 등급제 개선추진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개정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개정								
(1-1-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앙수화통역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화통역사 교육 - 전문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 수화통역사 양성지원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td><td>20명</td><td>40명</td><td>60명</td><td>80명</td></tr></table>	'13년	'14	'15	'16	'17		20명	40명	60명	80명
'13년	'14	'15	'16	'17								
	20명	40명	60명	80명								
(1-2-1)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 구축 ·영유아 정밀진단도구 및 전문가 양성 ·발달지연 정밀진단비 지원 단계적 확대 -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발달지연 의심)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6,480명</td><td>6,480명</td><td>6,480명</td><td>6,480명</td><td>6,480명</td></tr></table>	'13년	'14	'15	'16	'17	6,480명	6,480명	6,480명	6,480명	6,480명
'13년	'14	'15	'16	'17								
6,480명	6,480명	6,480명	6,480명	6,480명								
(1-2-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의 제공	- 정신병원에 중증 문제행동 치료실 설치 -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 활용	- 치료실 설치 개소수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개소</td><td>검토</td><td>검토</td><td>검토</td><td>검토</td></tr></table>	'13년	'14	'15	'16	'17	1개소	검토	검토	검토	검토
'13년	'14	'15	'16	'17								
1개소	검토	검토	검토	검토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2-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추진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장애아동지원센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table><tr><th>구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부모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건 수</td><td>2,000건</td><td>3,000건</td><td>3,500건</td><td>4,000건</td><td>5,000건</td></tr></table>	구분	'13년	'14	'15	'16	'17	부모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건 수	2,000건	3,000건	3,500건	4,000건	5,000건						
구분	'13년	'14	'15	'16	'17															
부모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건 수	2,000건	3,000건	3,500건	4,000건	5,000건															
(1-2-4)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신탁제도 신설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도입 - 장애인신탁제도 개선 및 보완	- 발달장애인 연금 상품 도입 및 신탁제도 관련 상품 출시 추진 <table><tr><th>구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연금상품 도입</td><td>상품 연구 실시</td><td>연금 상품 도입</td><td>3개</td><td>5개</td><td>7개</td></tr><tr><td>신탁제도 개선 출시</td><td>신탁제도 관련 연구</td><td>관련상품 개발출시</td><td>1개</td><td>3개</td><td>5개</td></tr></table>	구분	'13년	'14	'15	'16	'17	연금상품 도입	상품 연구 실시	연금 상품 도입	3개	5개	7개	신탁제도 개선 출시	신탁제도 관련 연구	관련상품 개발출시	1개	3개	5개
구분	'13년	'14	'15	'16	'17															
연금상품 도입	상품 연구 실시	연금 상품 도입	3개	5개	7개															
신탁제도 개선 출시	신탁제도 관련 연구	관련상품 개발출시	1개	3개	5개															
(1-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신청자격 확대(2급, '13년) - 급여량 확대 · 기본급여(월 한도액 기준 상향) · 추가급여(장애인 또는 가족의 결혼·출산·취업·학업 등 생활 환경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2급 확대</td><td>추가확대 검토</td><td>-</td><td>-</td><td>-</td></tr></table>	'13년	'14	'15	'16	'17	2급 확대	추가확대 검토	-	-	-								
'13년	'14	'15	'16	'17																
2급 확대	추가확대 검토	-	-	-																
(1-3-2)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확대 · 서비스대상 장애유형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확대 · 지원 대상·시간 연차적 확대	-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율 : 80%(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70%</td><td>70%</td><td>75%</td><td>75%</td><td>80%</td></tr></table>	'13년	'14	'15	'16	'17	70%	70%	75%	75%	80%								
'13년	'14	'15	'16	'17																
70%	70%	75%	75%	80%																
(1-3-3)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백만원, *출산시 산모1인기준)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비용지원 대상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300명</td><td>1,300명</td><td>14,00명</td><td>1,400명</td><td>1,500명</td></tr></table>	'13년	'14	'15	'16	'17	1,300명	1,300명	14,00명	1,400명	1,500명								
'13년	'14	'15	'16	'17																
1,300명	1,300명	14,00명	1,400명	1,500명																
(1-3-4) 장애인보장구 보험 급여 적용 확대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자세유지 보조기구) 보험급여 확대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 급여 신규 적용 <table><tr><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100명</td><td>4,600명</td><td>4,600명</td><td>4,600명</td><td>4,600명</td></tr></table>	'13	'14	'15	'16	'17	1,100명	4,600명	4,600명	4,600명	4,600명								
'13	'14	'15	'16	'17																
1,100명	4,600명	4,600명	4,600명	4,600명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4-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개소수 연차별 확대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40개</td><td>45개</td><td>50개</td><td>55개</td><td>60개</td></tr></table>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1-4-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기능 재정립 - 시설기준 개선 및 이용요건 완화 (소득수준 제한 없이 시설서비스 이용) - 시설 소규모화	-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 개선 (17.8, '12년)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5.6%</td><td>14.6%</td><td>13.8%</td><td>13%</td><td>12.2%</td></tr></table>	'13년	'14	'15	'16	'17	15.6%	14.6%	13.8%	13%	12.2%										
'13년	'14	'15	'16	'17																		
15.6%	14.6%	13.8%	13%	12.2%																		
(1-4-3) 장애인 전세·구입 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제공 ·구입, 전세자금 융자시 금리 우대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확대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지원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854억원</td><td>900억원</td><td>950억원</td><td>1,000억원</td><td>1,050억원</td></tr></table>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000가구</td><td>1,350가구</td><td>1,500가구</td><td>1,750가구</td><td>2,000가구</td></tr></table>	'13년	'14	'15	'16	'17	854억원	900억원	950억원	1,000억원	1,050억원	'13년	'14	'15	'16	'17	1,000가구	1,350가구	1,500가구	1,750가구	2,000가구
'13년	'14	'15	'16	'17																		
854억원	900억원	950억원	1,000억원	1,050억원																		
'13년	'14	'15	'16	'17																		
1,000가구	1,350가구	1,500가구	1,750가구	2,000가구																		
(1-4-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주택 특별(우선) 공급 지속 추진 -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확보	-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수도권 5%, 기타 3%</td><td>수도권 5%, 기타 3%</td><td>수도권 5%, 기타 3%</td><td>수도권 5%, 기타 3%</td><td>수도권 5%, 기타 3%</td></tr></table>	'13년	'14	'15	'16	'17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13년	'14	'15	'16	'17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1-5-1) 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 교육 확대	-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table><tr><th>구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예방 교육</td><td>51,000명</td><td>52,500명</td><td>54,000명</td><td>55,500명</td><td>57,000명</td></tr><tr><td>장애 체험</td><td>16,000명</td><td>16,500명</td><td>17,000명</td><td>17,500명</td><td>18,000명</td></tr></table>	구분	'13년	'14	'15	'16	'17	예방 교육	51,000명	52,500명	54,000명	55,500명	57,000명	장애 체험	16,000명	16,500명	17,000명	17,500명	18,000명		
구분	'13년	'14	'15	'16	'17																	
예방 교육	51,000명	52,500명	54,000명	55,500명	57,000명																	
장애 체험	16,000명	16,500명	17,000명	17,500명	18,000명																	
(1-5-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권역재활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재활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 지역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지속적 기능보강 실시	- 연차별 의료재활 기능보강 개소수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6개소</td><td>6개소</td><td>6개소</td><td>6개소</td><td>6개소</td></tr></table> -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보건소 개소수)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70개소</td><td>100개소</td><td>130개소</td><td>165개소</td><td>200개소</td></tr></table>	'13년	'14	'15	'16	'17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13년	'14	'15	'16	'17	70개소	100개소	130개소	165개소	200개소
'13년	'14	'15	'16	'17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13년	'14	'15	'16	'17																		
70개소	100개소	130개소	165개소	200개소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5-3)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모델 개발· 보급	- 준비 및 기반조성 단계 · 주간재활센터 조사 및 사회자원과의 연계사업 실시 ·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 - 사업활성화 단계 · 시범사업 후 한국형 사회복귀모델 제시 및 재활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복귀프로그램 개발(9건) 및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복귀센터 개설(6개소) 운영 <table><tr><th>구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사회복귀 프로그램개발</td><td>1건</td><td>2건</td><td>2건</td><td>2건</td><td>2건</td></tr><tr><td>지역사회복귀 센터개설</td><td>-</td><td>2개소</td><td>3개소</td><td>1개소</td><td>-</td></tr></table>	구분	'13년	'14	'15	'16	'17	사회복귀 프로그램개발	1건	2건	2건	2건	2건	지역사회복귀 센터개설	-	2개소	3개소	1개소	-						
구분	'13년	'14	'15	'16	'17																					
사회복귀 프로그램개발	1건	2건	2건	2건	2건																					
지역사회복귀 센터개설	-	2개소	3개소	1개소	-																					
(1-5-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건강·기능지표 개발·적용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마련 - 국가단위 장애인보건통계 생산 - 건강수준 평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고령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강화	- 건강수준 모니터링 체계 및 기반구축 · 연차별 추진목표(이행율 100%) <table><tr><th>구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통계생산 등 기반연구수행 (수행건수)</td><td>1건</td><td>2건</td><td>3건</td><td>3건</td><td>3건</td></tr><tr><td>모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개발건수)</td><td>1건</td><td>2건</td><td>2건</td><td>2건</td><td>2건</td></tr></table> -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건수 <table><tr><td>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개발건수)</td><td>-</td><td>1건</td><td>1건</td><td>1건</td><td>2건</td></tr></table>	구분	'13년	'14	'15	'16	'17	통계생산 등 기반연구수행 (수행건수)	1건	2건	3건	3건	3건	모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개발건수)	1건	2건	2건	2건	2건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개발건수)	-	1건	1건	1건	2건
구분	'13년	'14	'15	'16	'17																					
통계생산 등 기반연구수행 (수행건수)	1건	2건	3건	3건	3건																					
모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개발건수)	1건	2건	2건	2건	2건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개발건수)	-	1건	1건	1건	2건																					
(1-5-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대전보훈병원 시설 확충 · 본관 증축 및 주차장 건설 - 첨단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및 휠체어형 샤워 의자 등 공급확대 - 맞춤형 보철구 공급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대전보훈병원 시설확충</td><td>공정율 58%</td><td>공정율 100%</td><td>-</td><td>-</td><td>-</td></tr><tr><td>보철구 사용 만족도</td><td>81.8</td><td>83.4</td><td>85</td><td>86.6</td><td>88</td></tr><tr><td>첨단휠체어 사용자 만족도</td><td>82</td><td>83.6</td><td>85.2</td><td>86.8</td><td>88.2</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대전보훈병원 시설확충	공정율 58%	공정율 100%	-	-	-	보철구 사용 만족도	81.8	83.4	85	86.6	88	첨단휠체어 사용자 만족도	82	83.6	85.2	86.8	88.2
구 분	'13년	'14	'15	'16	'17																					
대전보훈병원 시설확충	공정율 58%	공정율 100%	-	-	-																					
보철구 사용 만족도	81.8	83.4	85	86.6	88																					
첨단휠체어 사용자 만족도	82	83.6	85.2	86.8	88.2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1-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확충 - 장애아보육료 지원확대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속 지원 - 장애아보육 활성화	-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으로 장애아 보육지원 강화 ·연차별 성과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아 전문시설</td><td>2개소 확충</td><td>2개소 확충</td><td>2개소 확충</td><td>2개소 확충</td><td>2개소 확충</td></tr><tr><td>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td><td>1,200명 지원</td><td>1,300명 지원</td><td>1,400명 지원</td><td>1,500명 지원</td><td>1,600명 지원</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아 전문시설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	1,200명 지원	1,300명 지원	1,400명 지원	1,500명 지원	1,600명 지원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아 전문시설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	1,200명 지원	1,300명 지원	1,400명 지원	1,500명 지원	1,600명 지원															
(2-1-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 장애영아 교육여건 개선 ·장애영아학급 운영편람 제공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의무 교육정착 ·유치원과정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순회 교육 실시	-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85학급 증설 ·연차별 장애유아 특수학급 증설 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7학급</td><td>17학급</td><td>17학급</td><td>17학급</td><td>17학급</td></tr></table>	'13년	'14	'15	'16	'17	17학급	17학급	17학급	17학급	17학급								
'13년	'14	'15	'16	'17																
17학급	17학급	17학급	17학급	17학급																
(2-1-3)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 - 장애학생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대 및 전공과 확충 ·연차별 증설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고등학교 특수학급</td><td>30학급</td><td>30학급</td><td>30학급</td><td>30학급</td><td>30학급</td></tr><tr><td>전공과</td><td>10학급</td><td>10학급</td><td>10학급</td><td>10학급</td><td>10학급</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고등학교 특수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전공과	10학급	10학급	10학급	10학급	10학급
구 분	'13년	'14	'15	'16	'17															
고등학교 특수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전공과	10학급	10학급	10학급	10학급	10학급															
(2-1-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도우미 지원	-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 만족도 76% 달성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학생 도우미 지원</td><td>2,500명</td><td>2,500명</td><td>2,750명</td><td>3,000명</td><td>3,000명</td></tr><tr><td>장애대학생 지원센터</td><td>257개소</td><td>260개소</td><td>263개소</td><td>266개소</td><td>270개소</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2,500명	2,500명	2,750명	3,000명	3,000명	장애대학생 지원센터	257개소	260개소	263개소	266개소	270개소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2,500명	2,500명	2,750명	3,000명	3,000명															
장애대학생 지원센터	257개소	260개소	263개소	266개소	270개소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1-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 16개소 지정·운영 '13년) -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프로그램 개발 보급(원격교육프로그램 30종 개발·보급 '13년) - 장애성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실태조사 '14년, '17년)	- 장애성인교육 지원확대로 만족도 제고 ·장애인성인 평생교육 참여자 만족도 연차별 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56점</td><td>57점</td><td>58점</td><td>59점</td><td>60점</td></tr></table> ※ 신규설정 목표 고려, 보통수준 55점 시작	'13년	'14	'15	'16	'17	56점	57점	58점	59점	60점														
'13년	'14	'15	'16	'17																						
56점	57점	58점	59점	60점																						
(2-2-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장애학생 수요에 부응 -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202개소 (특성화 9개소)</td><td>205개소 (특성화 15개소)</td><td>208개소 (특성화 21개소)</td><td>211개소 (특성화 27개소)</td><td>214개소 (특성화 33개소)</td></tr></table>	'13년	'14	'15	'16	'17	202개소 (특성화 9개소)	205개소 (특성화 15개소)	208개소 (특성화 21개소)	211개소 (특성화 27개소)	214개소 (특성화 33개소)														
'13년	'14	'15	'16	'17																						
202개소 (특성화 9개소)	205개소 (특성화 15개소)	208개소 (특성화 21개소)	211개소 (특성화 27개소)	214개소 (특성화 33개소)																						
(2-2-2) 일반학교 배치 특수 교육대상자 지원	- 일반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증설 - 일반학교 담당교사 연 500명 특수교육관련 연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감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특수학급 증설</td><td>500학급</td><td>500학급</td><td>500학급</td><td>500학급</td><td>500학급</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특수학급 증설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구 분	'13년	'14	'15	'16	'17																					
특수학급 증설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2-2-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콘텐츠 개발·보급 -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과정 개발	- 특수교육 관련인력의 전문성 제고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일반교원 통합교육 자료개발</td><td>2종</td><td>2종</td><td>2종</td><td>2종</td><td>2종</td></tr><tr><td>일반교육 전문연수 과정개발</td><td>3종</td><td>3종</td><td>3종</td><td>3종</td><td>3종</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반교원 통합교육 자료개발	2종	2종	2종	2종	2종	일반교육 전문연수 과정개발	3종	3종	3종	3종	3종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반교원 통합교육 자료개발	2종	2종	2종	2종	2종																					
일반교육 전문연수 과정개발	3종	3종	3종	3종	3종																					
(2-3-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일반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해 교육 연 2회 실시 - 일반 초·중학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인해 수업 실시 - 장애인식개선 행사 실시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차별 추진목표 달성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일반학교 학생 장애인해교육</td><td>2회</td><td>2회</td><td>2회</td><td>2회</td><td>2회</td></tr><tr><td>「대한민국 1교시」 장애인해 수업</td><td>1회</td><td>1회</td><td>1회</td><td>1회</td><td>1회</td></tr><tr><td>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td><td>1회</td><td>1회</td><td>1회</td><td>1회</td><td>1회</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반학교 학생 장애인해교육	2회	2회	2회	2회	2회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인해 수업	1회	1회	1회	1회	1회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1회	1회	1회	1회	1회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반학교 학생 장애인해교육	2회	2회	2회	2회	2회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인해 수업	1회	1회	1회	1회	1회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1회	1회	1회	1회	1회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3-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장애인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 단 운영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홍보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실시	- 상설모니터단 현장점검 연 4회 이상 실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연 4회 현장점검</td><td>연 4회 현장점검</td><td>연 4회 현장점검</td><td>연 4회 현장점검</td><td>연 4회 현장점검</td></tr></table>	'13년	'14	'15	'16	'17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13년	'14	'15	'16	'17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2-3-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 기기 등 제공 확대	-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학습보조 및 보조 공학 기기 등 지원</td><td>4,000명</td><td>4,500명</td><td>5,000명</td><td>5,500명</td><td>6,000명</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학습보조 및 보조 공학 기기 등 지원	4,000명	4,500명	5,000명	5,500명	6,000명																		
구 분	'13년	'14	'15	'16	'17																											
학습보조 및 보조 공학 기기 등 지원	4,000명	4,500명	5,000명	5,500명	6,000명																											
(2-4-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사업 · 중증장애인·고령층 대상 '재가 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83.9점 달성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만족도(점)</td><td>80</td><td>81</td><td>82</td><td>83</td><td>83.9</td></tr></table>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80점 달성	구 분	'13년	'14	'15	'16	'17	만족도(점)	80	81	82	83	83.9																		
구 분	'13년	'14	'15	'16	'17																											
만족도(점)	80	81	82	83	83.9																											
(2-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 창작 및 문화복지 사업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지원	-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홍보실적 “382건” 달성 ·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홍보실적(건)</td><td>315</td><td>330</td><td>347</td><td>364</td><td>382</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홍보실적(건)	315	330	347	364	382																		
구 분	'13년	'14	'15	'16	'17																											
홍보실적(건)	315	330	347	364	382																											
(2-4-3)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 인을 위한 영화상영 지속 확대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 시설 개선	- 장애인 영화 관람객 수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관람인원 (명)</td><td>7,000명</td><td>8,000명</td><td>9,000명</td><td>10,000명</td><td>12,000명</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관람인원 (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2,000명																		
구 분	'13년	'14	'15	'16	'17																											
관람인원 (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2,000명																											
(2-5-1)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3년부터 매년 230명씩) -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 동호인 클럽운영 다양화 -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 인구 증가 ·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인생활 체육참여율</td><td>11.6%</td><td>12.6%</td><td>13.6%</td><td>14.6%</td><td>15.6%</td></tr><tr><td colspan="6">※ 전국등록장애인 중 생활체육 참여 인구비율</td></tr><tr><td>장애인생활 체육동호인</td><td>13,551명</td><td>14,228명</td><td>14,939명</td><td>15,685명</td><td>16,469명</td></tr><tr><td colspan="6">※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인구 수</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생활 체육참여율	11.6%	12.6%	13.6%	14.6%	15.6%	※ 전국등록장애인 중 생활체육 참여 인구비율						장애인생활 체육동호인	13,551명	14,228명	14,939명	15,685명	16,469명	※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인구 수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생활 체육참여율	11.6%	12.6%	13.6%	14.6%	15.6%																											
※ 전국등록장애인 중 생활체육 참여 인구비율																																
장애인생활 체육동호인	13,551명	14,228명	14,939명	15,685명	16,469명																											
※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인구 수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5-2)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체육 정보체계 및 기능 강화 - 전문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 - 장애인 동계 체육시설 건립	- 사업목표 :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인체육종합시설 2단계 시설 증축 및 장애인 동계종목 전용훈련장 건립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인전용체육 시설2단계건립 공정률</td><td>83%</td><td>100%</td><td>-</td><td>-</td><td>-</td></tr><tr><td>장애인동계체육 시설 건립 공정률</td><td colspan="5">※ 소관 사업예산 확보 후 지표설정</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전용체육 시설2단계건립 공정률	83%	100%	-	-	-	장애인동계체육 시설 건립 공정률	※ 소관 사업예산 확보 후 지표설정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전용체육 시설2단계건립 공정률	83%	100%	-	-	-																											
장애인동계체육 시설 건립 공정률	※ 소관 사업예산 확보 후 지표설정																															
(2-5-3)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 경기력 강화(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장애인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국제기구 및 각국 NPC 등과 적극적 교류 활동)	- 국제대회 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 제고 -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제고 ·연차별 향상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td><td>21.4</td><td>22.5</td><td>23.6</td><td>24.8</td><td>26</td></tr><tr><td></td><td colspan="5">※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 (별도산식)</td></tr><tr><td>종목별 경기력 향상도</td><td>16.3</td><td>17.1</td><td>17.9</td><td>18.8</td><td>19.8</td></tr><tr><td></td><td colspan="5">※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 (별도산식)</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	21.4	22.5	23.6	24.8	26		※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 (별도산식)					종목별 경기력 향상도	16.3	17.1	17.9	18.8	19.8		※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 (별도산식)				
구 분	'13년	'14	'15	'16	'17																											
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	21.4	22.5	23.6	24.8	26																											
	※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 (별도산식)																															
종목별 경기력 향상도	16.3	17.1	17.9	18.8	19.8																											
	※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 (별도산식)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3-1-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연금액 단계적 인상 추진	- 연금액 단계적 인상 추진(추가생활비용 23만원 대비 연금액 비율) <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73%</td><td>75%</td><td>77%</td><td>79</td><td>80%</td></tr></table>	'13년	'14	'15	'16	'17	73%	75%	77%	79	80%								
'13년	'14	'15	'16	'17																
73%	75%	77%	79	80%																
(3-1-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소득보장체계 정립 및 발전방안 선행연구 - 소득보장체계 강화방안 세부 연구 - 공적·사적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 소득보장체계 제도개선 추진	-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선행연구 조사</td><td>세부 연구 용역</td><td>제도개선 방안마련</td><td>제도개선</td><td>제도개선</td></tr></table>	'13년	'14	'15	'16	'17	선행연구 조사	세부 연구 용역	제도개선 방안마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13년	'14	'15	'16	'17																
선행연구 조사	세부 연구 용역	제도개선 방안마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3-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생산시설 지정 확대 및 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 구매편의 및 생산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지원 강화 -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80개소 달성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 4,947억원 유지 ·연차별 추진 목표량 <table><tr><td>구 분</td><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생산 시설수</td><td>340개 소</td><td>375개 소</td><td>410개 소</td><td>445개 소</td><td>480개 소</td></tr><tr><td>우선 구매액</td><td>4,395억</td><td>4,527억</td><td>4,663억</td><td>4,803억</td><td>4,947억</td></tr></table> ※ 매년 예상물가상승률 3% 반영	구 분	'13년	'14	'15	'16	'17	생산 시설수	340개 소	375개 소	410개 소	445개 소	480개 소	우선 구매액	4,395억	4,527억	4,663억	4,803억	4,947억
구 분	'13년	'14	'15	'16	'17															
생산 시설수	340개 소	375개 소	410개 소	445개 소	480개 소															
우선 구매액	4,395억	4,527억	4,663억	4,803억	4,947억															
(3-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경영컨설팅 지원, 1사 1시설 결연 운동 - 직업재활 기능보강 및 서비스업, 1차산업 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	- 경영컨설팅 지원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d></td><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경영 컨설팅</td><td>30개소</td><td>30개소</td><td>35개소</td><td>35개소</td><td>40개소</td></tr></table> - 직업재활 기능보강 매년10% 증가		'13년	'14	'15	'16	'17	경영 컨설팅	30개소	30개소	35개소	35개소	40개소						
	'13년	'14	'15	'16	'17															
경영 컨설팅	30개소	30개소	35개소	35개소	40개소															
(3-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 인증,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수익계약 - 표준사업장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확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고용요건 차등적용 - 1그룹 1자회사 설립요건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table><tr><td>구 분</td><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표준 사업장 수</td><td>30개사</td><td>40개사</td><td>50개사</td><td>60개사</td><td>70개사</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표준 사업장 수	30개사	40개사	50개사	60개사	70개사						
구 분	'13년	'14	'15	'16	'17															
표준 사업장 수	30개사	40개사	50개사	60개사	70개사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3-2-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용자 및 무상지원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확대 -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맞춤형컨설팅 - 기업별 장애인고용의무 평가 강화로 나라장터에 제공(공공조달시) -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우대	- 수혜기업 고용환경 개선 이후 장애인고용증가율<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5%</td><td>5%</td><td>5.5%</td><td>6%</td><td>6.5%</td></tr></table>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목표수<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400명</td><td>400명</td><td>450명</td><td>450명</td><td>500명</td></tr></table>	'13년	'14	'15	'16	'17	5%	5%	5.5%	6%	6.5%	'13년	'14	'15	'16	'17	400명	400명	450명	450명	500명																				
'13년	'14	'15	'16	'17																																						
5%	5%	5.5%	6%	6.5%																																						
'13년	'14	'15	'16	'17																																						
400명	400명	450명	450명	500명																																						
(3-3-1)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확대 및 근무조건 정상화 - 내실화 방안 수립 및 적용 -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적용 - 취업 지원	- 장애인일자리 확대 ·연차별 추진 목표량<table><tr><td>구 분</td><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td><td>11,440 명</td><td>12,080 명</td><td>12,720 명</td><td>13,360 명</td><td>14,000 명</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11,440 명	12,080 명	12,720 명	13,360 명	14,000 명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11,440 명	12,080 명	12,720 명	13,360 명	14,000 명																																					
(3-3-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최저임금액 수준) -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4단계) - 의무고용률 조정으로 장애인 일자리수 확대	- 장애인고용 일자리수<table><tr><td>구 분</td><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일자리수</td><td>16만개</td><td>17만개</td><td>18만개</td><td>19만개</td><td>20만개</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자리수	16만개	17만개	18만개	19만개	20만개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자리수	16만개	17만개	18만개	19만개	20만개																																					
(3-3-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적합지위 발굴 - 중증장애인 고용목표 관리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자· 출연 법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의무 고용률<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2.5%</td><td>3%</td><td>3%</td><td>3%</td><td>3%</td></tr></table>	'13년	'14	'15	'16	'17	2.5%	3%	3%	3%	3%																														
'13년	'14	'15	'16	'17																																						
2.5%	3%	3%	3%	3%																																						
(3-3-4) 맞춤형 장애인 직업 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수혜대상 확대 및 기간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 특수학급 기업연수 대상 수(명)<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300</td><td>300</td><td>300</td><td>300</td><td>300</td></tr></table>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대상 수(명)<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300</td><td>300</td><td>300</td><td>300</td><td>300</td></tr></table> - 지원고용수혜대상 목표수(명)<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2300</td><td>2300</td><td>2300</td><td>2300</td><td>2300</td></tr></table> - 시험고용 수혜자 대상(명)<table><tr><td>'13년</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300</td><td>300</td><td>300</td><td>300</td><td>300</td></tr></table>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13년	'14	'15	'16	'17	2300	2300	2300	2300	2300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13년	'14	'15	'16	'17																																						
2300	2300	2300	2300	2300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3-3-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활성화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 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매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수 확대 추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수급자 만족도 82.7% 달성 - 중증장애인 취업 및 훈련인원 연간 증가율 3.2% 달성 ·연차별 취업인원 확대 목표량 <table>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r> <td>6,463명</td> <td>6,669명</td> <td>6,882명</td> <td>7,102명</td> <td>7,330명</td> </tr> </table>	'13년	'14	'15	'16	'17	6,463명	6,669명	6,882명	7,102명	7,330명
'13년	'14	'15	'16	'17								
6,463명	6,669명	6,882명	7,102명	7,330명								
(3-4-1)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실 확대	-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수 확대(개소) <table>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r> <td>90</td> <td>104</td> <td>120</td> <td>130</td> <td>140</td> </tr> </table>	'13년	'14	'15	'16	'17	90	104	120	130	140
'13년	'14	'15	'16	'17								
90	104	120	130	140								
(3-4-2)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아이템 발굴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및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장애인 창업지속률 87% 달성 ※ 창업지속률 : (∑창업지속인원/∑창업인원) <table>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r> <td>87</td> <td>87</td> <td>87</td> <td>87</td> <td>87</td> </tr> </table>	'13년	'14	'15	'16	'17	87	87	87	87	87
'13년	'14	'15	'16	'17								
87	87	87	87	87								
(3-4-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강화	- work-together 센터 확대 (고용지원 맞춤형 서비스)	- work-together 센터 확대 목표수 <table> <tr> <th>'13년</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r> <tr> <td>18개</td> <td>18개</td> <td>18개</td> <td>18개</td> <td>18개</td> </tr> </table>	'13년	'14	'15	'16	'17	18개	18개	18개	18개	18개
'13년	'14	'15	'16	'17								
18개	18개	18개	18개	18개								
(3-4-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노동시장 종합분석 통계 시스템 구현 및 데이터 관리	- 패널조사 매년 실시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 장애인통계집 매년 발간										

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1-1)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 환경 구축	-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로 장애인서비스 확대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수집 및 정보자료실 설치· 보급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인대체자료 제작·수집</td><td>5,000 종</td><td>6,000 종</td><td>7,000 종</td><td>8,000 종</td><td>9,000 종</td></tr><tr><td>장애인정보 자료실</td><td>30관</td><td>40관</td><td>50관</td><td>60관</td><td>70관</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대체자료 제작·수집	5,000 종	6,000 종	7,000 종	8,000 종	9,000 종	장애인정보 자료실	30관	40관	50관	60관	70관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대체자료 제작·수집	5,000 종	6,000 종	7,000 종	8,000 종	9,000 종															
장애인정보 자료실	30관	40관	50관	60관	70관															
(4-1-2)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자막100%, 수화5%, 화면해설10%, 유료방송 지상파의 50~70% 달성) - 방송수신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인방송 편성 사업자 수</td><td>153</td><td>155</td><td>155</td><td>155</td><td>155</td></tr><tr><td>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 만족도</td><td>72</td><td>72</td><td>74</td><td>74</td><td>76</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방송 편성 사업자 수	153	155	155	155	155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 만족도	72	72	74	74	76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방송 편성 사업자 수	153	155	155	155	155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 만족도	72	72	74	74	76															
(4-1-3)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 정보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td><td>*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td><td>*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td><td>*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td><td>*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td></tr></table>	'13년	'14	'15	'16	'17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13년	'14	'15	'16	'17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 (1,000명) *실태조사 : 600개																
(4-1-4)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스마트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기 개발·지원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td><td>3건</td><td>3건</td><td>3건</td><td>3건</td><td>3건</td></tr><tr><td>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td><td>4,000 대</td><td>4,000 대</td><td>4,000 대</td><td>4,000 대</td><td>4,000 대</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000 대	4,000 대	4,000 대	4,000 대	4,000 대
구 분	'13년	'14	'15	'16	'17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000 대	4,000 대	4,000 대	4,000 대	4,000 대															
(4-1-5)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 실시 - 정보 활용능력 배양	- 정보화교육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35,000명</td><td>35,950명</td><td>35,950명</td><td>35,950명</td><td>35,950명</td></tr></table>	'13년	'14	'15	'16	'17	35,000명	35,950명	35,950명	35,950명	35,950명								
'13년	'14	'15	'16	'17																
35,000명	35,950명	35,950명	35,950명	35,950명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2-1)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목표 추진 - 표준모델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중형저상버스 개발 R&D 추진	- 연차별 도입계획(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기준) <table><tr><th>구분</th><th>총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보급률</td><td>-</td><td>19.1</td><td>24.7</td><td>32.2</td><td>41.5</td><td>41.5</td></tr></table>	구분	총계	'13년	'14	'15	'16	'17	보급률	-	19.1	24.7	32.2	41.5	41.5										
구분	총계	'13년	'14	'15	'16	'17																				
보급률	-	19.1	24.7	32.2	41.5	41.5																				
(4-2-2)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 (콜택시) 도입 확대	-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고지원 및 지자체 도입 계획을 감안, 단계별 도입 - 장애인 이동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등 검토를 통한 적정 보급대수 기준 검토	- 법정보급대수 100%(2,785대) 달성 · 연차별 도입 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1,971대 (70%)</td><td>2,249대 (80%)</td><td>2,526대 (90%)</td><td>2,785대 (100%)</td><td>지속추진</td></tr></table>	'13년	'14	'15	'16	'17	1,971대 (70%)	2,249대 (80%)	2,526대 (90%)	2,785대 (100%)	지속추진														
'13년	'14	'15	'16	'17																						
1,971대 (70%)	2,249대 (80%)	2,526대 (90%)	2,785대 (100%)	지속추진																						
(4-2-3) 전철 등에 이동편의 시설 확충	- 수도권전철 역사 외부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 이동편의시설 확충 · 연차별 목표량 <table><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역수</td><td>3개역</td><td>2개역</td><td>2개역</td><td>2개역</td><td>2개역</td></tr><tr><td>E/M(대)</td><td>2</td><td>5</td><td>1</td><td></td><td></td></tr><tr><td>E/S(대)</td><td>8</td><td>16</td><td>12</td><td>6</td><td>10</td></tr></table>	구 분	'13년	'14	'15	'16	'17	역수	3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E/M(대)	2	5	1			E/S(대)	8	16	12	6	10
구 분	'13년	'14	'15	'16	'17																					
역수	3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E/M(대)	2	5	1																							
E/S(대)	8	16	12	6	10																					
(4-2-4)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인증 추진	- 교육·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BF인증 인증건수 연차별 확대	- BF인증 연차별 확대 목표량 100% 달성 · 연차별 목표 인증건수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90건</td><td>100건</td><td>120건</td><td>150건</td><td>180건</td></tr></table>	'13년	'14	'15	'16	'17	90건	100건	120건	150건	180건														
'13년	'14	'15	'16	'17																						
90건	100건	120건	150건	180건																						
(4-2-5)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관련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성 - 지속적인 기술개발예산 확대	- 국민 편의 증진 기술 개발사업 · 연차별 추진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시제품 제작(0.5건/과제)</td><td>*시제품 제작(0.55건/과제)</td><td>*시제품 제작(0.6건/과제)</td><td>*시제품 제작(0.66건/과제)</td><td>*시제품 제작(0.73건/과제)</td></tr></table>	'13년	'14	'15	'16	'17	*시제품 제작(0.5건/과제)	*시제품 제작(0.55건/과제)	*시제품 제작(0.6건/과제)	*시제품 제작(0.66건/과제)	*시제품 제작(0.73건/과제)														
'13년	'14	'15	'16	'17																						
*시제품 제작(0.5건/과제)	*시제품 제작(0.55건/과제)	*시제품 제작(0.6건/과제)	*시제품 제작(0.66건/과제)	*시제품 제작(0.73건/과제)																						
(4-3-1)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운영 확대	-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중앙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1개소</td><td>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6개소 (중앙 1개소, 지방 5개소)</td><td>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9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8개소)</td><td>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13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2개소)</td><td>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17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td></tr></table>	'13년	'14	'15	'16	'17	중앙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1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6개소 (중앙 1개소, 지방 5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9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8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13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2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17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13년	'14	'15	'16	'17																						
중앙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1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6개소 (중앙 1개소, 지방 5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9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8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13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2개소)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센터 17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VI.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3-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 -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table><tr><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마련</td><td>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제출</td><td>정신 보건법 개정안 마련</td><td>정신 보건법 개정안 제출</td><td>시행</td></tr></table>	'13	'14	'15	'16	'17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마련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제출	정신 보건법 개정안 마련	정신 보건법 개정안 제출	시행														
'13	'14	'15	'16	'17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마련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제출	정신 보건법 개정안 마련	정신 보건법 개정안 제출	시행																						
(4-3-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table><tr><th colspan="5">- 연차별 추진목표</th></tr><tr><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해외사례 및 정책연구</td><td>위기대응 매뉴얼 개발(1차)</td><td>위기대응 매뉴얼 개발(2차)</td><td>매뉴얼 보급 및 교육</td><td>교육 및 보급 확대</td></tr></table>	- 연차별 추진목표					'13	'14	'15	'16	'17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1차)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2차)	매뉴얼 보급 및 교육	교육 및 보급 확대									
- 연차별 추진목표																										
'13	'14	'15	'16	'17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1차)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2차)	매뉴얼 보급 및 교육	교육 및 보급 확대																						
(4-4-1)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확대	-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 정보 제공,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확대 및 체계적 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table><tr><th colspan="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연차별 이용자수 및 만족도</th></tr><tr><th></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이용 자수</td><td>52,000명</td><td>54,000명</td><td>56,000명</td><td>58,000명</td><td>60,000명</td></tr><tr><td>만족 도</td><td>89점</td><td>90점</td><td>90점</td><td>90점</td><td>90점</td></tr></table>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연차별 이용자수 및 만족도							'13	'14	'15	'16	'17	이용 자수	52,000명	54,000명	56,000명	58,000명	60,000명	만족 도	89점	90점	90점	90점	90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연차별 이용자수 및 만족도																										
	'13	'14	'15	'16	'17																					
이용 자수	52,000명	54,000명	56,000명	58,000명	60,000명																					
만족 도	89점	90점	90점	90점	90점																					
(4-4-2)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연차적 확충 - 장애인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확대 - 장애유형별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 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table><tr><th colspan="6">- 장애인 상담소 단계적 확대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 목표</th></tr><tr><th>구 분</th><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보호시설</td><td>6개소</td><td>8개소</td><td>9개소</td><td>10개소</td><td>11개소</td></tr></table>	- 장애인 상담소 단계적 확대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보호시설	6개소	8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 장애인 상담소 단계적 확대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보호시설	6개소	8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4-4-3)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13) - 진술조력인 양성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table><tr><th colspan="5">- 법률조력인 지원자 1,200명 달성</th></tr><tr><th>'13년</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2,500명</td><td>2,800명</td><td>3,100명</td><td>3,400명</td><td>3,700명</td></tr></table>	- 법률조력인 지원자 1,200명 달성					'13년	'14	'15	'16	'17	2,500명	2,800명	3,100명	3,400명	3,700명									
- 법률조력인 지원자 1,200명 달성																										
'13년	'14	'15	'16	'17																						
2,500명	2,800명	3,100명	3,400명	3,700명																						
(4-5-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 -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상황 평가 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table><tr><th colspan="5">-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th></tr><tr><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추진단 설립 세부목표 수립</td><td>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td><td>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td><td>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td><td>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td></tr></table>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					'13	'14	'15	'16	'17	추진단 설립 세부목표 수립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																										
'13	'14	'15	'16	'17																						
추진단 설립 세부목표 수립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5-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추진	- 유엔에스캅과 함께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 APCICT를 활용한 장애인 관련 ICT 교육프로그램 개발 - KOICA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 실무자 워크샵 개최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연차별 추진계획 <table><tr><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td><td>장애인 관련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td><td>장애인 지적 가이드 개발</td><td>에스캅 워크샵</td><td>에스캅 중간보고 준비</td></tr></table>	'13	'14	'15	'16	'17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관련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지적 가이드 개발	에스캅 워크샵	에스캅 중간보고 준비
'13	'14	'15	'16	'17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관련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지적 가이드 개발	에스캅 워크샵	에스캅 중간보고 준비								
(4-5-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 장애인권리위원회 사례 검토 -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채택	- 연차별 추진 목표 <table><tr><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r><tr><td>* 회의참석 및 의원 면담 * 관계부처 협의체계 구축 및 회의 개최 (1회)</td><td>*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장애인권리 위원회 국가 보고서 심의</td><td>* 관계부처 회의 반기별 개최(2회) * 국가보고서 심사권고 사항 검토</td><td>* 선택의정서 비준추진 (부처협의 2회) * 간담회 1회, 국내관련법 모니터링</td><td>* 국회 협의 * 국내 관련 법 정비</td></tr></table>	'13	'14	'15	'16	'17	* 회의참석 및 의원 면담 * 관계부처 협의체계 구축 및 회의 개최 (1회)	*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장애인권리 위원회 국가 보고서 심의	* 관계부처 회의 반기별 개최(2회) * 국가보고서 심사권고 사항 검토	* 선택의정서 비준추진 (부처협의 2회) * 간담회 1회, 국내관련법 모니터링	* 국회 협의 * 국내 관련 법 정비
'13	'14	'15	'16	'17								
* 회의참석 및 의원 면담 * 관계부처 협의체계 구축 및 회의 개최 (1회)	*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장애인권리 위원회 국가 보고서 심의	* 관계부처 회의 반기별 개최(2회) * 국가보고서 심사권고 사항 검토	* 선택의정서 비준추진 (부처협의 2회) * 간담회 1회, 국내관련법 모니터링	* 국회 협의 * 국내 관련 법 정비								

참고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부서

★ 신규과제

분야	번호	중분류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1. 장애인 복지 · 건강 서비스 확대	1-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1-1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1-2	장애인정책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1-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1-2-1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2-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2-4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1-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2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3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1-4-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4-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4-3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1-4-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1-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1-5-1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분야	번호	중분류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2.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 체육 향유 확대			1-5-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5-3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5-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립재활원)
			1-5-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2-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1-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1-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1-3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1-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1-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2	특수교육지원 강화	2-2-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2-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2-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2-3-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3-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3-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2-4-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4-3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분야	번호	중분류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3.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2-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2-5-1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5-2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5-3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3-1-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1-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2-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2-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3-3-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3-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3-4-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3-4-2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3-4-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4-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4-1-1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4-1-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자권익증진과



분야	번호	중분류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4.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4-1-3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4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5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4-2-1	저상버스 도입 확충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2-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2-3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4-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2-5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4-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3-1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3-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3-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 참여 활성화	4-4-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4-4-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복지지원과
			4-4-3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4-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4-5-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5-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5-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